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일정기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본교의 연구풍토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본교의 강의와 출근 의무를 면제받고 연구와 관련된 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근속년수라 함은 본교에 임용된 날로부터 연단위로 산정한 근무기간을 말하되,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 ① 본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거나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12.12.18., 2020.2.25., 2024.03.29.)

② 2회째 이상의 연구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휴직중인 교원, 비전임 교원, 연구실적 제출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전임교원에게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6., 2024.03.29.)

제4조(기간) ① 연구년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기간 동안 최대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16., 2012.12.18., 2017.12.29., 2018.8.24., 2024.03.29.)

② 연구년은 월 단위로 하되 근속기간이 6년 이상 근속시 최대 6개월이며, 6년 근속자가 교수연구년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 12년 근속 후 12개월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전임교원은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8.24., 2020.2.25., 2024.03.29.)

③ 연구년 교원이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유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초과 기간을 휴직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2018.8.24.)

제5조(연구년의 시효)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해당 기간에 연구년 전 기간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신분 및 처우)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년 기간을 승급, 승진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년 교원에게는 평상 근무시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단, 각종 수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2.2.16., 2024.04.25.)

제7조(인원) ① 연구년 교원수는 원어민 교수를 제외한 연간 교원 총수의 1/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별 인원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23., 2018.8.24., 2020.2.25.)

② 삭제 (2018.8.24.)

제8조(선발시기 및 신청) ① 연구년 대상자 선발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총장이 연구 및 학술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연구년을 부여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연구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기일 내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8.8.24.)

제9조(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연구교원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근속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1차 연구년 대상자 및 해외유학 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9.07.23.)

1.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2. 교원업적평가 점수(최근 3년)
3. 상위 직급인 자
4. 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횟수가 적은 자

② 교학처는 제3조, 제7조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년 교원을 교무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총장은 이를 확정하여 연구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7.12.29., 2018.8.24.)

제10조(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교내 및 국내의 타 대학교나 교육기관에 출강할 수 없으며, 교외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전임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전문분야와 관련된 타 대학교, 연구기관, 학술단체에서의 연구 활동, 단회성 특강 및 연구년 종료 2주전 차기 학기 교내 강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9.)

② 연구년 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복교 후 30일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12개월 이내에 결과논문을 각각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교원은 학위취득 후 7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실적을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8.8.24., 2020.2.25.)

④ 연구년 교원은 복교 후 최소한 연구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20.2.25.)

⑤ 제2항이나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교원 연구년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교원은 차기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연구년 결과로서의 논문 게재에 대해서는“이 논문은 0000년도 루터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7.12.11.)

3-3-13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근속년수) 휴직기간은 이 규정에서의 근속년수에서 감한다.

제12조(지원해외연구·파견 등과의 관계) 연구년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지원해외연구(해외연구비 지급기관이 정부 또는 본교이거나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본교의 선정과정을 거쳐 해외지정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대상자가 되거나 국내교류교수 또는 학술교류협정교 교환교수로 파견될 때에는 이를 연구년으로 보며, 연구년교원 선정 시 해당 교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다만, 국제학술교류협정에 의거, 학술교류협정교에 교환교수로 파견되어 의무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은 2003년까지 5년 이상 근속으로 교수연구년이 해당되는 자는 그 연구년을 인정하고 차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교수연구년 연구계획서

1. 연구 과제명 :

2. 연구의 필요성 :

3. 연구의 목적 :

4. 연구방법 개요 :

5. 연구 일정 및 세부계획 :

6. 소요예산
 - 가. 연구활동비:
 - 나. 자료수집비:

7. 소요경비의 부담 방법
 - 가. 본인부담액 :
 - 나. 외부(개인 또는 기관) 지원액 :
 - 다. 합 계 :

8. 주요 연구자료 목록

9.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

10. 기타 참고사항 :